

하남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295
----------	------

발의연월일 : 2026년 7월 31일

발의자 : 오승철 의원

1. 제안이유

- 하남시의회에서 시행하는 포상과 관련하여 공적심사위원회에 외부위원을 포함하고 위원회 제척·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포상 제한기준과 포상의 취소 및 환수 절차를 정비함으로써 포상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공적심사위원회에 외부위원을 포함하고 위원장·부위원장, 간사,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12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 나. 공적심사위원회 위원회 제척 및 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제10항)
- 다. 포상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무원에 대한 포상 제한기준을 정비함(안 제13조제2항)
- 라. 거짓 공적, 포상 기준 부적합 및 부정한 방법에 의한 공적서류 작성·제출 등을 포상 취소 사유로 규정함(안 제13조의2제1항)
- 마. 포상 취소 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표창장·감사장·상장 및 부상 등의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의2제2항 및 제3항)

3. 검토의견

가. 입법 필요성

- 포상은 의회 업무수행이나 지방자치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개인·단체 등의 공적을 인정하고 격려하기 위한 제도로, 포상대상자의 선정과 취소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현행 공적심사위원회가 내부위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포상대상자 선정과 취소 심사의 객관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외부위원의 참여를 통해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또한 위원이 심사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심사대상 공적에 관여한 경우에도 심사에서 배제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면 심사 결과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위원의 제척 및 회피에 관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포상 제한기간과 포상 취소 사유 및 환수 절차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포상대상

자 선정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포상을 사후에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입법 필요성이 인정됨.

나. 입법 적정성

- 안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공적심사위원회에 시민단체 등 외부기관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나 포상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한 것은 포상 심사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한 조치로 판단됨.
-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위원장 직무대행, 간사 및 회의의 소집·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은 위원회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같은 조 제10항에서 위원 본인이 심사대상자인 경우, 심사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및 심사대상 공적이나 취소 사유가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를 제척 사유로 규정하고,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하도록 한 것은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공적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함.
- 안 제13조제2항에서 포상 추천일 현재 실제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공무원과 일정 기간 내 의장 이상의 표창 또는 정부포상을 받은 공무원을 포상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은 단기간 내 반복 포상을 방지하고 포상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 특히 휴직기간과 직위해제기간을 실제 재직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은 실질적인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포상 자격을 판단하려는 것으로, 포상 제한기준의 명확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의장 이상의 표창”에는 지방의회 의장뿐만 아니라 시장, 도지사, 장관 등 다른 기관장의 표창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실제 운영 과정에서 적용할 훈격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안 제13조의2에서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포상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이 포상을 받은 경우 및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제출한 경우를 취소 사유로 규정한 것은 부적정한 포상을 사후에 시정하고 포상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함.
- 포상을 취소할 때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한 것은 취소 처분의 객관성과 신중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로 판단됨. 다만 감사장과 상장의 경우 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포상의 성격과 행정 효율성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와 부상을 환수하도록 하되, 수상자의 사망·실종·이민이나 물품의 훼손·분실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환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것은 현실적인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규정으로 판단됨.

다. 법적 타당성

- 지방의회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자율적인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자치입법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됨.
- 「정부 표창 규정」에서도 동일한 공적이나 성적에 대한 이중표창을 제한하고 있으며, 포상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한 포상 제한기준을 두는 것은 포상제도의 일반적인 운영 원칙에 부합함.
-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포상 조례에서도 공적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포상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이 포상을 받은 경우 등을 포상 취소 사유로 정하고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창장과 부상 등을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개정안의 포상 취소 및 환수 체계는 유사 입법례와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

됨.

- 공적심사위원회가 포상대상자의 공적 및 추천의 적정성과 포상 취소 사유의 해당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는 입법례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포상 수여뿐만 아니라 포상 취소도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한 것은 절차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라. 결론

- 본 개정조례안은 공적심사위원회에 외부위원을 포함하고 위원들의 제척·회피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포상 제한기준과 포상 취소 및 환수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포상 운영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입법 필요성이 인정됨.
- 외부위원의 참여와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들의 심사 배제는 공적심사의 객관성을 강화하고, 포상 제한기간의 명확화와 부적정 포상에 대한 취소·환수 규정은 포상제도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